분진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7.

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 : 김 기 영 o 개정자 : 한 인 수

o 제·개정 경과

- 1994년 6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1994년 7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1995년 9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1996년 4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02년 2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02년 3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12년 7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- o 관련규격 및 자료
- 미국 NFPA 68, FM 및 Uniform fire code 등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(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(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 의 사용 금지)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(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)
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분진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 232조(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),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, 제239조(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) 및 제240조(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)의 규정에 의거 가연성분진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대상 분진 및 설비

이 지침은 별표의 가연성 분진(이하 "분진"이라 한다)을 발생시키는 물질 등의 저장, 가공, 운반설비 및 이로부터 발생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제진설비(이하 "설비"라 한다)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분진"이라 함은 직경 420미크론(Micron)이하인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로서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되면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.
- (나) "불활성가스 봉입장치"라 함은 질소,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분진 등이 폭발되지 않도록 설비 등의 내부를 폭발최소 산소 농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(다) "폭발최소 산소농도"라 함은 밀폐된 설비 등에서 분진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 산소 농도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4. 분진제거

설비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 및 기타 표면에 분진이 누적, 비산되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한다.

#### 5. 분진발생 설비의 구조

분진발생 설비는 뚜껑 설치 또는 밀폐구조로 하여 가능한 한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6. 금속분리 장치

분쇄기의 입구에는 인입되는 금속과 설비와의 접촉으로 인한 스파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 7. 제진설비

- (1) 제진설비는 벽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(가) 제진설비는 가능한 한 외부로 향한 벽근처에 설치하고 그 배기덕트는 짧게 외부로 설치하며 제진설비 및 덕트가 그 내부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
- (나) 제진설비 내부에 10항의 불활성가스 봉입 또는 11항의 폭발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
- (2) 모든 분진발생 설비는 제진설비에 연결되어야 하며, 제진설비가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분진발생 설비도 가동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3) 여과포를 사용하는 제진설비에는 차압계 또는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여과포는 도전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4) 제진설비 가동 정지시에는 경보 또는 경광등이 작동되어야 한다.
- (5) 내부 고착물에 의한 열축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 8. 점화원 관리

분진발생 또는 분진 취급지역에서는 흡연, 직화 이용기기 및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.

#### 9. 접지 등

공기로 분진발생물질을 수송하는 설비와 관련된 수송덕트의 접속부위는 접지 및 본딩하여야 한다.

#### 10. 불활성가스 봉입

- (1) 분진발생 설비가 폐쇄계(Closed system)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소 등과 같은 불활성가스를 봉입하여 산소농도를 폭발최소농도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. 다만, 불활성가스에 의한 질식이 우려되거나 또는 불활성가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2) 불활성가스 공급배관에는 불활성가스의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,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고, 불활성가스가 봉입되는 설비에는 산소 농도 측정계를 설치하여 설비내의 산소농도를 폭발최소농도이하로 유지하 여야 한다.

## 11. 폭발 방호장치

- (1) 설비에는 분진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설비 및 관련 덕트 등이 최고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·제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가) 설비에서 폭발이 발생되었을 때 폭발이 인근 설비로 전달되지 않도록 고속 작동밸브 등을 사용하여 설비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의 최고 폭 발압력에 견딜 수 있는 차단장치

- (나) 분진폭발로 인한 압력 상승시 분진 및 연소물을 설비외로 분출시킬 수 있는 폭발 압력 방산구
- (다) 설비내의 분진 점화를 감지하는 즉시 적절한 소화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폭발 억제장치
- (2) (1)호의 규정 중 설비내의 분진이 독성이 있어 외부로 분출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폭발 압력 방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
<별표>

#### 분진을 발생시키는 물질의 종류의 예

#### 1. 곡물분진을 발생시키는 물질

- o 셀룰로오스
- 0 코르크
- o 옥수수, 보리, 콩, 목화씨, 아마씨, 귀리, 밀, 쌀, 해바라기씨
- o 달걀흰자위
- o 분유
- o 콩가루
- o 녹말
- o 설탕 등

#### 2. 탄소질 분진을 발생시키는 물질

- o 목탄
- o 역청탄
- 0 코크스
- o 갈탄
- o 이탄
- o 목재
- o 지류 등

## 3. 화학 분진을 발생시키는 물질

- o 아디프산(Adipic acid)
- o 안트라퀴논(Anthraguinone)
- o 아스코르브산(Ascorbic acid)
- o 칼슘 아세테이트(Calcium acetate)
- o 칼슘 스테아레이트(Calcium stearate)
- o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스(Carboxymethyl cellulose)
- o 덱스트린(Dextrin)
- o 락토오스(Lactose)

- o 스테아린산 납(Lead stearate)
- o 메틸셀룰로오스(Methyl cellulose)
- o 파라 포름알데하이드(Paraformaldehyde)
- o 소디움 아스코베이트(Sodium ascorbate)
- o 소다움 스테아레이트(Sodium stearate)
- o 황 등

#### 4. 금속분진을 발생시키는 물질

- o 알루미늄
- o 청동
- o 철카보닐(Iron carbonyl)
- o 마그네슘
- o 아연 등

## 5. 플라스틱 분진을 발생시키는 물질

- o 폴리아크릴아미드(Polyacrylamide)
- o 폴리아크릴로니트릴(Polyacrylonitrile)
- o 폴리에틸렌(Polyethylene)
- o 에폭시 수지(Epoxy resin)
- o 멜라민 수지(Melamine resin)
- o 페놀 셀룰로오스(Phenol cellulose)
- o 메틸아크릴레이트(Methyl acrylate)
- o 페놀수지(Phenolic resin)
- o 폴리프로필렌(Polypropylene)
- o 테르펜 페놀수지(Terpene-phenol resin)
- o 요소-포름알데히드 셀루로오스(Urea-formaldehyde/cellulose)
- o 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(Vinylacetate copolymer)
- o 폴리비닐알코올(Polyvinyl alcohol)
- o 폴리비닐부티랄(Polyvinyl butyral)
- o 폴리비닐 클로라이드(Polyvinyl chloride)
- o 폴리비닐 클로라이드/비닐아세틸렌 공중합체(Polyvinyl chloride/vinyl acetylene copolymer) 등